

<별 첨>

감사청구 이유

최근 카카오톡의 mVoIP서비스인 ‘보이스톡’ 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단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관련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2001년 이후 3개 통신사업자가 고착화된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물리적 망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음성전화, 문자, 데이터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독점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반면 이용자들은 독과점 시장의 폐해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체계, 왜곡된 보조금 및 단말기 유통방식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후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음성전화나 문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변화는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에 반하여 자신들과 경쟁하는 서비스, 모바일인터넷전화(이하 mVoIP)서비스 등을 차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mVoIP서비스 차단 등의 행위는 이미 201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 규정을

무시한 채 인가·신고처리해 주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2011년 망중립성 포럼,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독점적 사업자인 망사업자와 기타 부가통신사업자간에 균형잡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논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정책결정과정의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비공개 논의를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덕분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대립과 불신만 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① mVoIP서비스를 차단하는 이용약관을 인가·신고처리 ②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③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미처리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청구 사항

1. 이용자 이익 저해하는 이용약관의 인가

1) mVoIP서비스 차단 이용약관의 인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1)와 동법 시행령 제35조2)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 등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고시에 의해 SKT 이동전화서비스는 이용약관 인가, KT와 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는 이용약관 신고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서비스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에 대하여, SKT는 2010년 7월에 인가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2010년 12월에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 1)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이용자는 mVoIP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 제한적으로 mVoIP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mVoIP서비스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SKT나 KT와 마찬가지로 요금제별 허용량을 설정하였습니다.

2) mVoIP 서비스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규정의 위법성

물리적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mVoIP서비스 등 특정서비스를 차단 한다면, 역무의 제공의무 위반,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차별, 이용자의 이익저해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약관규정을 인가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① 과다 트래픽 유발 ② 수익저하를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mVoIP서비스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면, 유튜브 등 동영상이나 음악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부 이용자(합리적 범위 내)의 과도한 트래픽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통신사들의 약관상에는 다량사용자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어 트래픽 문제에 대하여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다량사용의 데이터 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KT는 올인원54는 70MB/일, 올인원64는 100MB/일, 올인원79는 150MB/일, 올인원94는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KT는 i-밸류 75MB/일, i-미디엄 100MB/일, i-스페셜 150MB/일, i생-프리미엄 300MB/일의 범위 내에서, LG유플러스는 스마트54 70MB/

일, 스마트64 100MB/일, 스마트74 150MB/일, 스마트94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mVoIP서비스를 차단 또는 제한하는 것은, 트래픽의 문제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수익을 위해 mVoIP서비스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는 현행법상 촉진되어야 하는 경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mVoIP를 차단 또는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규제방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국가기관이 데이터 요금에 대하여 약관인가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사들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종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12월 23일 발표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음성서비스나 영상통화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mVoIP서비스와 경쟁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즉,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처럼 약관의 심사를 통하여 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었다면 망중립성과 같은 이슈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mVoIP등의 경쟁서비스를 제한할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mVoIP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통신사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해당조항은

위 전기통신사업법 각 규정에 반하므로 인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반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하거나 신고·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는 현행법상의 직무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³⁾의 규정에 따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지 ②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는지 ③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약관인가에 필요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반하는 약관을 인가하여 주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4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단위(0.1초)에 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의 과금단위(10초)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수리 할 때에는 요금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인가하고, 요금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이익에 저해가 되는 이용약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행위를 할 경우 위와 같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약관인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까(증 제1호).

따라서 감사원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SK텔레콤이 mVoIP차단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50조⁴⁾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지 판단하여 주

-
- 3)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4)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시기 바랍니다.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 올인원 요금 중

○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불가

○ 데이터 통화

- 1) 기본제공 데이터는 국내 사용분에 한하며, 정보이용료, 건당 부과되는 서비스(컬러메일)은 대상에서 제외
- 2) 회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단,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정 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폭주 등의 경우),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 MOD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다량 사용 : 일사용량이 아래 기준량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올인원 54 : 70MB/일

올인원 64 : 100MB/일

올인원 79 : 150MB/일

올인원 94 : 200MB/일

- 3)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 통화는 아래 제공량 내에서 사용 가능

올인원 34, 44 : 사용 제한

올인원 54 : 200MB

올인원 64 : 300MB

올인원 79 : 500MB

올인원 94 : 700MB

- 4) 올인원 34, 44는 기본제공데이터 초과 시 데이터 통화료 0.025원/0.5KB

2.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처리위반

1)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지난 5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한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하고, 삼성전자에게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

는 “권고” 를 결정하였습니다(증 제2호). 이는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가입자 중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서(안건번호 2012-25-095호)에 의하면,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여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의결하였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 라며 삼성전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시정조치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⁵⁾ 전단의 이용약관과 다른 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였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V.5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성격이 동일한 LG 스마트TV와 구별하여 삼성 스마트TV만을 접속제한 한 행위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단말기 제조사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로 해당조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호 마목⁶⁾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 2012.2.28>). 그리고 트래픽 급증으로 인터넷 중단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을 차단했다는 KT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무 위반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스마트TV의 접속차단 행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9일,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과는 대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위법성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를 본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법적근거도 없이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징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삼성전자에 대한 권고규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러한 권고는 KT에 대한 징계를 더욱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규정위반에 대하여 아예 심사하지 않은 점, 삼성전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권고한 점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신고처리 위반

1) mVoIP서비스 차단에 대한 신고처리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서비스 차단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 의무 등)⁷⁾,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⁸⁾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3호).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1. 11. 23일자 신고 건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시장조사과-1085)을 통하여 검토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증 제4호). 검토의견에는 ‘mVoIP 서비스가 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가 어렵고 급속한 기술발전예 따라 가까운 미래의 서비스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 편익 제고와 지속적인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를 위한 mVoIP 서비스가 네트워크 및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모니터링,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 진보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즉 mVoIP 차단은 기술진보,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8)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mVoIP인 ‘보이스톡’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의 허용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할 것” 이라고 시장 자율 원칙을 표명하였습니다(증 제5호). 또한 지난 7월 3일 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 해명자료를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제공 여부와 제공수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증 제6호).

2)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무 위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②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③ 법에 따라 엄격한 임원의 자격이 요구되며 ④ 주식취득 시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⑤ 외국정보 또는 외국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⑥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장 큰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사업을 기간통신화하여 허가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므로 과점상태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약관인가로 인하여 발생한 mVoIP서비스 차단 또는 제한이라는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법령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보내고 지금껏 민원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직무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회의록 작성·관리 주의요구 불이행

감사원은 지난 2008년 4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회의 내용의 기록·보존을 통해 통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참석자의 발언요지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실질적인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2010-15호) 제17조(회의록 등의 작성) 제1항은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속기록을 근거로 별지 서식으로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불참위원, 의결사항 등 회의내용을 작성·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등 형식적인 사안만 정리한 결과록을 작성하여 어떠한 논의를 거쳐 당초 상정안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었는지, 가중·감경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회의록 등의 작성) 제2항에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작성한 속기록도 제20조(회의록 등의 공개)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회의록 작성·관리 조치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입니다.

5. 결론

전화, 인터넷 등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무선 통신망의 개방, 경쟁, 혁신이 주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며,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반시설인 통신망의 공공성을 지키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mVoIP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책정, 경쟁서비스 차단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자율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통신망의 공공성을 전제로 mVoIP서비스 차단 등 개방, 경쟁, 혁신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제기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을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미처리 등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강력히 청구합니다.